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중증 소아·청소년 환자 영양비 급여확대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

1.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중증 소아·청소년 환자 영양비 급여확대 시행(2026.5.1.)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 경로 등을 안내드리오니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귀 학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급여품목: 산소포화도측정기(기기 및 소모품), 기도흡인기, 경장영양주입펌프

나. 시행일: 2026. 5. 1.

다. 급여기준: 19세 미만인 자 중 진단기준을 충족한 경우 구입비(영양비) 지원

구 분	산소포화도측정기	기도흡인기	경장영양주입펌프
지원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인공호흡기 영양비 급여대상자 ② 산소치료 영양비 급여대상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인공호흡기 영양비 급여대상자 ② 기관절개관 보유 환자 	위루관으로 경장영양중인 환자 중 정밀한 주입속도 조절을 위해 경장영양주입펌프가 1년 이상 필요한 자
처방전문의	신경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내과, 결핵과, 흉부외과, 소아청소년과 ※ 현(現) 인공호흡기 처방 전문의와 동일	신경과, 재활의학과,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	신경과, 재활의학과,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
처방기간	96개월(8년)	36개월(3년)	60개월(5년)

※ 상세 내용은 하단 게시경로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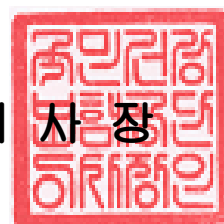
◆ 게시 경로

- (제도 소개) 공단 홈페이지 > 정책·제도 > 건강보험 제도안내 > 중증 소아·청소년 재가치료기기 지원
- (보건복지부 고시) 복지부 홈페이지 > 정보 > 법령 > 훈령/예규/고시/지침 > 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」 고시 일부개정
- (공단 공고) 공단 홈페이지 > 국민소통·참여 > 뉴스·소식 > 공지사항 > 중증 소아·청소년 재가치료기기 준요양기관 등록 및 운영 기준 등에 관한 공고
- (전산 매뉴얼, 다빈도 Q&A) ① 공단 홈페이지 > 정책·제도 > 자료실 > 일반자료실
② 요양기관정보마당 > 기본정보 > 커뮤니티 > 매뉴얼 > 영양비

3. 아울러 영양기관 게시용 제도 홍보물을 함께 송부하오니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중증 소아·청소년 환자 영양비 급여확대 홍보물 1부. 끝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수신자 관련 전문의학회

대리 이재희

팀장 심영보

부장 전결 4/30
김은숙

협조자

시행 급여지급부-1300 (2026.4.30.) 접수 ()
우 2646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7, 10층(반곡동, 건강보험공단 별관) / <http://www.nhis.or.kr>
전화 033-736-3318 전승 033-749-6361 / 191928@nhis.or.kr / 비공개(7)